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3. 8. 28.(월) 10:05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상임위원 (2인)

불참위원 : 없음

제3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동관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두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동관 위원장
 - 2023년도 제3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첫 회의이기도 해서 제가 간단히 소회를 겸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개최하는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 첫 공식 회의입니다. 비록 완전체로 출범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지고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방송·통신 미디어 업계가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래비전 수립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 되어 완전체로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양망합니다. 부디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동관 위원장

- 2023년도 제30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이지만 절차상 차기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기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신임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었는데 안건 심의에 앞서서 이동관 신임 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문성과 경륜을 두루 갖춘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주시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 산적한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도 적극 부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제6기 방통위가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6.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동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과 <의결안건 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 <의결안건 다>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이의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그럼,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의결안건 다>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다.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2023-31-096)

○ 이동관 위원장

- <의결안건 다>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별지] 기재 지역의 TV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이상 저온·서리 등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6월 27일~7월 27일 발생한 집중호우 및 8월 9일~11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수상기에 대해 「방송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수신료 면제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면제 현황입니다. 2000년 이후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해 지금까지 총 17차례 수신료를 면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면제 필요성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재난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제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세대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면제기간입니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면제기간, 피해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2개월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작년 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2개월 면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한국방송공사에 공문을 송부해서 수신료 면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재난 및 지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과 호우 그리고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분들께 늦었지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사무처가 제시한 수신료 면제대상 및 기간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동관 위원장

-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집중호우와 침수피해로 취약계층이 언제나 그렇지만 피해가 크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안전망의 바깥에 있거나 탈락하기 쉬운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부의 방향과 시책에도 맞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과제발굴에 애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다음은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5분 】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2023-31-094) (비공개)

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2023-31-095) (비공개)

【 10시 23분 】

7. 기 타

○ 이동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동관 위원장

- 이상으로 2023년도 제3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4분 폐회 】